

강의료 지급 규정

2016년 08월 19일 제정 2020년 04월 0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전임교원,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구분 및 정의) ① 본교에서 진행되는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②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해 진행되는 강의를 특별강의라 한다.

③ 책임시간 이외의 강의를 초과강의라 한다.

④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강의를 시간강의라 한다.

제3조(책임시간) 본교의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 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시당 시간 수) 1교시당 시간 수는 50분을 단위로 하되, 야간 수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강의료 지급) ①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였을 경우 책임시간을 제외한 초과강의 시간 수에 대하여 강의료를 지급한다. 초과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간 강의료는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의 학력, 경력 등을 기준으로 강의료를 지급하여 그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강의료 계산) 강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보통강의는 1교시를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강의료는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다만 학기말 종강에 있어서는 1주 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
3. 특별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강의를 하지 않은

전임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기간
2.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
3. 국경일
4.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 휴업할 때

제8조(강의료 지급일) 강의료는 특별강의료를 제외하고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3월 강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0. 04. 01.>

시간 강의료 지급 기준표

등급	등급별 기준	시간당 강의료(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A	-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 전문대학의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제 대학 강의경력 5년 이상	32,000	29,000
B	-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조교수) - 전문대학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소지자로서 4년제 대학 강의경력 3년 이상 ~ 5년 이하 - 박사과정생으로서 4년제 대학 강의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가 없는 특수실기 과목 담당강사가 4년제 대학 강의경력 5년 이상	30,000	27,000
C	- 박사과정생으로서 A와 B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8,000	25,000

(단,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특수실기 과목 담당교원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박사과정 A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